

債權銀行을 통한 企業構造調整의 法的 問題*

박 환 일**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債權銀行을 통한 企業構造調整의 특성 |
| II. 企業構造調整의 여러 方法 | V. 主債權銀行의 當面課題 |
| III. 企業構造調整促進法の 주요 내용 | VI. 맺음말 |

I. 머리말

1997년의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는 강도 높은 재벌개혁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 작업은 경제위기가 많이 해소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본래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이행사항이었지만, 정부가 문제의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직접 지시하지 않고 채권은행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초 정부는 30대 그룹으로 하여금 주거래은행과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후 財閥 스스로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은행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자금지원을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는 채권은행이 기업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새로 하여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했으나 경제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실시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는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 파산을 신청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서 채권은행들이 일차적으로 계약 방식에 의하여 거래처의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이것이 주효하지 못할 때 법원에 신청하여 法定倒産節次를 밟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구조조정은 채권적 효력밖에 없어 채권금융기관이 많을 경우에는 상호간의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紳士協定에 그치는 예가 많았다. 더욱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이행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시간만 허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다. 많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계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企業構造調整促進法」(2001. 8. 14. 법률 제6504호)도 채권은행

* 이 연구는 2002년 경희대학교의 연구비 지원 결과임.(KHU-20020027)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며, 다만 일부 절차에 있어서 법적인 의무와 효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조치는 도산절차를 밟는 것 외에 IMF 위기 직후 새로 설치된 각종 構造調整專門機構를 통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채권은행이 직접·간접으로 관여하는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고 있다.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은 국민경제상 의의가 막중하므로 그에 대한 법적인 분석이나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이 어떠한 법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II),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법적인 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종전의 방식에 비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III). 이러한 견지에서 워크아웃 등 종전의 부실기업 정리방법과 IMF 위기 이후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기법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에 새로 도입된 각종 구조조정 전문기구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IV). 이러한 채권은행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표준화될 수 있다면(V) 현재 부실채권처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中國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¹⁾

II. 企業構造調整의 여러 方法

1. 企業構造調整·倒産制度의 종류

1.1. 개 관

우리나라는 그 동안 限界企業을 정리하거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절차인 회사정리·화의·파산 외에도 산업합리화 조치, 은행관리, 부도유예협약, 협조용자, 워크아웃 등 여러 방안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기업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 제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²⁾ 우선 대상기업을 再建시키느냐 아니면 退出시키느냐에 따라 再建(rehabil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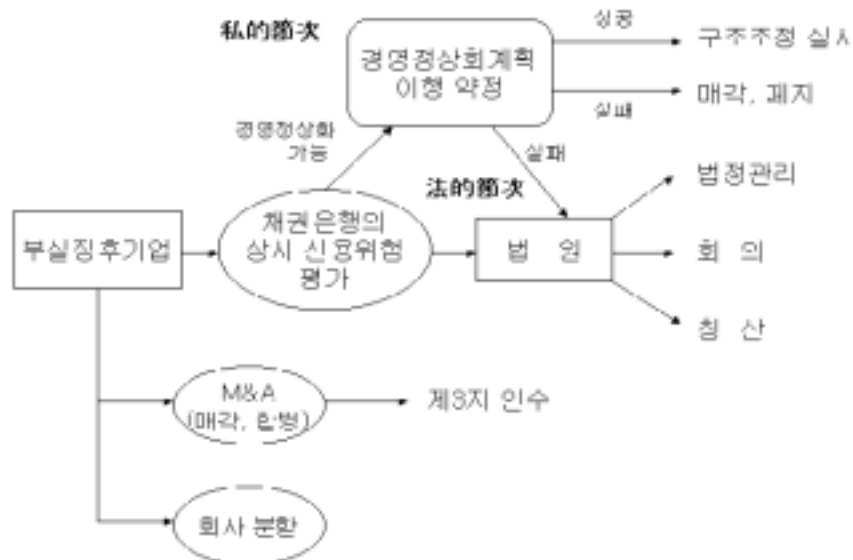
-
- 1)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사례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여러 나라의 관심을 불러모아 한국 자산관리공사(KAMCO)는 이들 나라의 감독당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11월 미국 신용평가회사(S&P)로부터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2)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구조조정방법은 법적 근거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최도성·지현열, 「회사정리제도」, 1998, 74면; 한국산업은행, 「企業倒産法 해설」, 1999, 5~13면 참

型和 清算(liquidation)型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종래의 재산관계에 변경을 가하여 재건을 도모하는 것이고, 후자는 기업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기로 하고 기업활동을 정리한 후 기업을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法的 節次와 私的 節次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商法 및 非訟事件節次法,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에 의하여 각각 규율된다. 후자의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사적 계약을 통하여 기업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法的 節次는 法院을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私的 節次는 채권자, 채무자 등 당사자를 중심으로 관계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청산 또는 재건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主債權銀行의 은행관리는 비록 企業構造調整促進法을 근거로 하지만, 협의회 또는 은행과 대상기업 간의 합의에 입각한 사적 절차에 속한다.

<그림 1>

不實徵候企業의 處理 흐름도



조), 경영학적으로는 달리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M&A 또는 도산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divestiture)하거나, 자회사를 분리 설립 (spin-off), 분할설립(split-off), 지분의 일부를 분리공개(equity carve-out), 분리매각 (sell-off) 또는 자발적으로 분리정리(voluntary bust-up)하는 것 등으로 나누고 있다. NYU School of Business, *Restructuring Firms & Industries*, John Wiley & Sons, Inc., 2001, pp.397-398.

<표 1>

企業構造調整節次の 비교

	會社整理節次	和議節次	破産節次	清算節次
대 상	재정난에 봉착하였으나 更生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	기업회생을 위하여 채권자들과의 합의가 가능한 기업	채무초과·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기업	해산한 회사
근 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상법 531~542조
개시 원인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파산원인에 비해 다소 완화	파산원인보다 완화되어 있지만, 파산 시에는 배당에 갈음하여 파산자가 변제계획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에 빠진 경우	해산 후 잔여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 용	법원이 일반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참가하여 다수결로 정한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절차 수행	채권자들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예를 내용으로 합의한 화의 조건에 따라 절차 수행	법원이 파산자의 전재산을 파악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이를 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분배	청산인이 회사의 잔여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 주주들에게 배분

<표 1>은 기업구조조정 의 법적 절차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적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2. 銀行管理制度

은행관리란 채권은행이 채무자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여 자금관리 등을 행하면서 은행의 채권 및 담보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기업개선작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주거래은행이 대상 기업체와 銀行管理契約을 체결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주거래은행은 채권·채무에 대한 동결조치를 하지 않고 이자를 유예해주거나 추가로 자금지원을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1.3. 企業改善作業(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이란 부실화된 기업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 등 도산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의하여 채무의 구성이나 상환일정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私的 和議’(private composition)라고도 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과 협상을 벌여 自救計劃을 마련하게 하고 債務再調整 과정을 거쳐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원리금상환 유예, 이자감면, 만기연장,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채무조건을 완화해주고 필요하면 신규자금을 공여한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워크아웃이 파산신청 대신 많이 이용되었으며, 영국에서도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대규모 기업부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英蘭銀行(Bank of England)이 비공식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1998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채권은행들이 중심이 되어 IMF 위기로 도산에 직면하게 된 기업들을 거래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작업을 벌이도록 한 것은 바로 영란은행이 취하였던 ‘런던식 접근법’(London Approach)을 따른 것이다.³⁾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 상호간의 자율협약인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⁴⁾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종종 多數決로써 기업개선계획(work-out plan)이 강제되곤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企業構造調整

3)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은 부실기업 정리에 노력하였지만 시행착오도 많았다. 대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으로 우리 경제가 未曾有의 危機에 처하게 되자 1997년 말 大選에서 승리한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의 재벌기업 대책이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마침내 1998년 1월 新政府와 5대 재벌(현대, 삼성, SK, LG 및 대우)은 「기업구조조정 5원칙」에 합의하였다.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비대위”)가 5대 재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5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채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 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이었다. 당시 李憲宰 비대위 기획단장은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3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①기업 스스로 한다 ②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 ③수단은 은행을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워크아웃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오늘날 개인 워크아웃 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DJ노믹스 未完의 改革”, 2002.1.16자.

4) 본래 1997년 초 한보철강을 비롯한 대기업의 도산이 속출하자 채권은행들은 일종의 紳士協定을 맺고 대상기업의 부도처리를 유예하였다.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부실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일명 ‘不渡猶豫協約’)을 체결하고 대상기업에 協調融資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부도유예협약은 IMF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상기업의 추가부실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양산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이다. 그 결과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이 1998년 6월 25일 제정되어 1999년 12월 31일까지 限時的으로 시행되었다.

促進法」이 제정되어 2001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2. 기존 워크아웃에 따른 법률문제

채권은행을 통하여 추진되었던 기업개선계획은 일종의 自律協議에 의한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 데 그쳤으므로 종전의 기업개선 작업에 있어서 종종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⁵⁾

첫째, 채권금융기관간의 다수결로 워크아웃 플랜이 결정되었을 때 여기에 반대한 금융기관들도 무조건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가.

둘째, 담보부 채권을 보유한 은행은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비해 先順位 담보를 확보하였음에도 법률상 보장된 우선변채권을 유보 내지 일부 포기해야 하는가.

셋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원리금의 減免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 워크아웃의 법적 구속력

워크아웃에 있어서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행사를 유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자금 지원까지 상호간에 합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건설 등에 대한 워크아웃에서 일부 종합금융회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신규 자금지원을 거부하자 논란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실시하기로 한 구조조정협약이 깨지기 때문이다. IMF 체제 하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기업개선 작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속력 있는 강제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自律的 合意를 토대로 한 워크아웃에 있어서 채권금융기관들은 다수의 의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난에 처한 종금사들로 하여금 가능한 범위에서 신규 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금액이나 조건을 달리 하는 등의 노력이 요청되었다.

2.2. 담보권 실행의 유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담보물건의 처분 등 자구계획의 이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① 당해 물건의 피담보 채권, ② 무담보 채권 및 보증채권의 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중에서 담보부 채권, 시설자금을 우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수를 점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또는 구조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5) 박환일,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법률문제”, 『경영법무』, 1999.7, 68~73면.

이와 상반되는 주장이 나오곤 하였다.

워크아웃이 아무리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현행 법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순위를 정한 담보에 있어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라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담보제도의 본질이므로 선순위 담보권과 후순위 담보권은 일률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담보권자간의 우열을 무시하는 회사정리절차에서도 담보권자를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차등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담보물건을 처분할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순위에 따라 변제하도록 정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2.3. 부채탕감에 대한 규제

일부 채권금융기관은 그 설립법상 이자는 감면해줄 수 있어도 원금은 감면해줄 수 없게 되어 있어 워크아웃 플랜에서 대상기업에 대한 원리금 탕감을 정할 때 논외로 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실 원리금을 감면(discounted pay-off)해주는 방안은 기업의 M&A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현행 법제상 M&A의 방법에는 주식매매, 개별자산 인수, 채권양도 등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만일 채권은행을 통하여 부채구조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받은 후 출자전환(debt/equity conversion)을 하게 될 터이므로 채권매매 대금의 지급은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實物株券으로 대물변제하거나 株金납입액과 상계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M&A에 관한 한 채권은행은 모든 방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⁶⁾

따라서 담보권 실행이나 회사정리·화의절차에 있어서 부실화된 대출채권을 담보물의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대출채권 원금 이하의 가액으로 매각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아니므로 총채권액을 기준으로 이 사회의 의결 내지 감독기관(설립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요할 것이다.

3. 企業構造調整方法의 比較

이상 설명한 여러 제도를 清算型과 再建型으로 분류한다면 파산, 청산 등의 청산형 절차는 기업의 잔여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회사정리절차, 화의, 워크아웃 등의 재건형 절차는 채무를 정리함과

6) 이러한 형태의 부채탕감은 한라필프제지 등 회사정리·화의절차에 들어간 기업(Failing Company 조건)이 外資를 유치하는 경우(Foreign Capital 조건)에 인정되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100억원의 대출금을 10년에 걸쳐 회수하는 것보다 그 절반인 50억원을 당장 받는 것이 현금흐름 면에서 유리하므로 이 방식이 선호되었고, 법원에서도 채권은행, 대상기업, 인수자 모두에게 유리한 '원-원' 거래로서 적극 권장되었다.

동시에 기업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법원은 부실기업을 존속시켰을 때의 가치(存續價値)가 청산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분될 수 있는 가치(清算價値)보다 클 경우에는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재건형은 종업원, 협력업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주는 충격이 적고 사회적으로도 회사를 해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⁷⁾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재건형이 청산형보다 선호되고는 있으나, 중국적으로 재기할 가망이 없으면 결국 파산 등 청산형 절차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앞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전의 워크아웃을 법제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되고 있는 데다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한 「채무사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 입법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통합도산법안에 따르면 종전에 회사정리, 화의, 파산을 선택하여 절차를 신청하던 것이 법원의 심리에 따라 당해 기업에 적합한 절차를 결정하게 하고 있다.

III. 企業構造調整促進法の 주요 내용

1. 立法趣旨

종전의 워크아웃 절차는 채권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기업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일부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多數決로 강제되었다. 그러나 협약에 가입한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합의에 소극적이거나 채권금융기관 간에 의견이 대립된 경우에는 기업개선작업이 지지부진하였으며, 심지어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워크아웃 협약에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어 종종 문제가 발생하였다.⁸⁾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외자도입의 걸림돌이 되었던 기업회계의 투명성 문제를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을 기초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법”이라 함)을 제정하고 한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같은 해 9월 15일부

7) IMF 사태 때 도산 위기에 빠진 많은 기업들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화의절차를 이용하였다. 화의 절차는 채권채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중소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에 선호되었던 것이다.

8) 워크아웃이 아무 강제성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될 때 그만 추진력을 상실하고 만다. 예컨대 (주)진도의 경우 1998년 7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10월 워크아웃이 개시되었으나 무려 104차례(운영위원회 포함)나 회의를 하였음에도 아무 성과 없이 2001년 5월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말았다.

터 시행하였다. 이 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限時的으로 시행된다(부칙 제2조 1항).

2. 主要 骨子

2.1. 對象企業의 확대 및 신용위험의 常時評價

이 법은 채권은행에 기업구조조정 주도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외부 자금지원 없이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황이 어려운, 이른바 부도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이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이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이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의 은행관리, 다른 채권금융기관과의 공동관리에 들어가거나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2조 1항).

이와 아울러 채권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업의 부실위험의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법 제9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 실사·기업존속능력 평가 등을 받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법 제11조).⁹⁾

채권은행의 常時評價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우선 대상기업의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를 강화하고(법 제5조) 분식회계 등의 사실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한편(법 제6조), 채권은행은 여신신청 기업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7조).

2.2. 債權金融機關協議會의 법정기구화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의 주거래은행 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이 되며, 기업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 법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의 워크아웃과는 달리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는 물론 증권회사, 위탁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자산운용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조합,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으로 대폭 확대하였다(법 제2조 1호, 동 시행령). 외국 금융기관도 위와 같은 금융기관으로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예컨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는 이에 포함된다.¹⁰⁾

9) 기업회계정보와 신용위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외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자산 70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들 기업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의 작성·보고 및 변경 방법 등에 관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조).

10)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채권자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약약서를

채권금융기관의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전담기구가 있어야 하는 바, 이 법은 당해 기업의 모든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있다(법 제24조 2항).

협의회의 결정이 대표성 및 정당성을 가지려면 성립 및 의결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협의회는 총신용공여액의 1/4 이상 발의로 소집되며,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 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다 엄격한 의결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즉,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3/4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이에 찬성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제27조).

만일 어느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서면으로 반대의사 표시)하는 경우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29조 1항). 매수가격은 양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법 제29조 4항).

다만, 채권금융기관간의 의견대립이 심할 경우에는 절차의 停頓(deadlock)을 피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행하도록 하였다(법 제31조). 이 기구는 금융 및 분쟁조정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체이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2조).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결과에 불복하는 채권금융기관은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3조 2항).

2.3. 特例 認定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채를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 제한, 재산운용 제한, 액면 이하의 출자전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34조).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3. 시행 상의 法的 問題點

3.1. 채권행사 유예 등의 違憲性

당초 이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의 협의회 소집과 동시에 모든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것, 일반채권자나 외국 금융기관은 이러한 不作爲의무에서 제외한 것이 憲法上的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재정경제부 측에서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채권매수

제출하면 채권금융기관으로 취급된다(법 제24조 5항).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반대 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유지하되 채권행사의 유예는 금융감독원장이 채권 금융기관에 대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단지 요청[行政指導]만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타결을 보았다. 그리고 소액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많은 채권자들을 채권단협의회에 참여시켜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외국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韓國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¹⁾

또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되는 신규 신용공여에 대하여 優先辨濟權을 주는 방안(법 제18조)이 기존 채권자와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정 담보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채권자들이 새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우선권을 갖게 되므로 차별성은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를 존치하기로 했다. 기왕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므로 이 법에 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3.2. 異議 있는 債權者의 처우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채권재조정 방안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법 제17조 1항 2문). 이 때 협의회의 의결은 총 담보채권액 중 3/4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여야 효력이 있다(법 제17조 2항).

중전의 워크아웃은 私的 和議이므로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3/4 이상의 동의(채권잔액 기준)를 얻어 가결하도록 했다. 비록 결정 내용에 반대하더라도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한 결과 非民主的인 운영이 종종 문제가 되곤 하였다.

반면 이 법은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민주성을 고려하여 일부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첫째, 협의회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 비중이 5/100에 미달하는 소액 채권금융기관을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법 제25조). 둘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채권금융기관 및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은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법 제29조 1항 1문). 이 기간 내에 채권매수를 청구하지 않으면 당해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법 제29조 1항 2문).

반대 채권자가 채권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협의회는 1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11) 2001년 10월 체이스맨해튼 등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지점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대출채권을 해외 지점이나 본점으로 이관하는 편법을 써서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2001.10.5자 4면.

및 조건을 반대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에 찬성한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법 제29조 2항). 그 代案으로 협의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기타 협의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반대 채권자의 채권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당해 기업이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29조 3항).

3.3. 協約 違反者에 대한 제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하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은 공동보조를 취하여 재정적 곤란에 처한 기업의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채권금융기관의 3/4 이상이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면 다행이지만, 보유 채권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선다면 청구가격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불가피하다. 채권금융기관 간에 의견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채권금융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31조)을 거치게 되지만 이에 실패하면 결국 법정으로 가야 한다. 또 협의회 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며, 손해액의 산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은 종전의 기업개선작업에 따른 문제점을 불식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나 強制力이 수반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 법은 종전과 같이 일부 금융기관들의 반대로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구조조정의 혜택만 누리려는 금융기관(free rider)을 배제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신용공여액의 3/4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면 나머지 금융기관도 이에 따르거나 반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협의회에서 아예 탈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협의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 전부를 위하여 협의회에 違約金을 납부하거나(법 제30조 2항),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받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게 하고 있다(법 제30조 1항).

이 법은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다. 사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워크아웃 단계에서 5천억원에 달하는 신규 신용공여안이 부결되었던 하이닉스반도체¹²⁾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된 다음에는 지원 규모가 1조원으로 늘어나 협의회 소속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하에서는 채권행사 유예기간(최장 3개월)이 끝날 때까지 정상화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면 회사정리절차 외에는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채권금융기관 간에

1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행 후 첫 케이스로 구조조정이 실시된 하이닉스반도체는 당초 약속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물러나기로 하고 경영정상화이행 약정(MOU)을 맺었다. 하이닉스는 2006년까지의 경영정상화 계획에서 TFT-LCD 사업부문 등 비핵심자산 매각을 포함한 자구계획, 인력·조직의 합리화 실행방안, 연간 경영목표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경제신문, “하이닉스 정상화 실패 땐 경영진 퇴진”, 2003.1.31자.

事前調律을 하거나, 일단 안건을 표결에 부친 뒤 부결될 경우 수정안을 재상정하여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이 주효할 수 있다.

IV. 債權銀行을 통한 企業構造調整의 特性

1. 종전 構造調整方法과의 차이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달라진 점은 官이 주도하는 대신 채권은행을 앞세웠다는 것, 그리고 구조조정 전문기구를 크게 활용¹³⁾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후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기술지원차관(TAL)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 다국적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의뢰하는 일이 많았고 자연히 외국에서 성과를 올린 구조조정 전문기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IMF가 한국 정부와의 양해각서(MOU)에서 강화하도록 요구한 것은 독립되고 통합적인 금융감독기관과 예금보험기구였다. 그러나 IMF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 정리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AMC)와 그 재원을 조성하는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Arthur Anderson 등)가 제안한 구조조정 전문기구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CRV)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만든 기구로는 자산유동화(asset-backed securitization: ABS)의 중심 역할을 하는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가 있다.¹⁴⁾

이 중에서 채권은행이 주도적으로 설립하거나 이용하는 전문기구는 CRV와 AMC, SPC이다. CRV는 2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 참여하는 구조조정투자회사를 말하고, AMC는 전문적으로 자산관리를 수행하는 회사¹⁵⁾이다. 부실채권을 유동화(ABS)함에 있어서는 SPC가 불가결하다. 이러한 구조조정 전문기구가 선호되는 이유는 구조조정 작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살릴 수 있고 상호 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IMF 및 외국인투자자들이 이러한 방식에 호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운영되어 온 구조조정 전문기구는 <표 2>와 같다.

13) 박현일, “IMF 협약과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 『경희법학』 제35권 제1호(2000.12), 경희법학연구소, 55~58면.

14) 박현일, “구조조정 전문기구의 법인격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36권 제1호(2001.8.), 108~109면.

15) AMC는 단순히 자산관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은행기능이 없는 KAMCO가 양질의 부동산을 잘 관리(예컨대 리모델링)해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정재룡·홍은주, 『부실채권 정리』, 삼성경제연구소, 2003, 272~275면.

<표 2>

構造調整專門機構의 종류

종 류	근거법	도입시 기	법적 성격	취급 업무
CRF 기업구조조정 기금	증권투자회 사법 제76조	1998. 9	주식회사형 뮤추얼펀드 (페이퍼컴퍼니)	- 4개의 폐쇄형 뮤추얼펀드 운용 - 주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신규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한 6개월 미만의 유가증권에 투자 - NPL은 투자대상에서 제외
SPC 유동화전문 회사	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 제17조	1998. 9	상법상의 유한회사 (페이퍼컴퍼니)	- 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 유동화증권의 발행
CRC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산업발전법 제14조	1999. 5	상법상의 주식회사	- 구조조정(법정관리/화의기업) 대상기업의 인수와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 결손기업, 부실가능기업의 인수 - AMC 참여 - M&A
CRV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구조조정투 자회사법 제3조	2000.10	뮤추얼펀드형 한시적 회사 (페이퍼컴퍼니)	-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인수 - 최소 2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의 출자 참여 및(즉 1회사 1CRV) - AMC앞 자산운용의 위탁
REITs 부동산투자 회사	부동산투자 회사법 제3조	2001. 7	상법상의 주식회사 (계속적 회사)	-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 또는 대출 - 총자산의 9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으로 구성
CR-REITs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	부동산투자 회사법 제49조의2	2001. 7	뮤추얼펀드형 한시적 회사 (페이퍼컴퍼니)	- 총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구조 조정용 부동산으로 구성 - 채무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자료: 김현수, “기업구조조정의 제도와 방향”, 『기업평가』, 한국기업평가, 2001.7. 3~8면에서
요약.

2. 債權銀行 주도의 專門機構 활용

2.1.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CRV)

채권은행들이 自律協約¹⁶⁾에 의하여 일시적 유동성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위한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이들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및 대출채권 등을 CRV에 결집(pooling)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하고, 기업구조조정에 전문성을 가진 자산관리회사(AMC)에 자산운용을 맡겨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CRV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채권은행들의 공동출자 형식으로 설립된다. 그리고 CRV에 결집된 자산은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그 수익은 주주인 채권금융기관 등에 배당하게 된다. 실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등의 업무는 AMC가 수행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보관이나 일반사무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채권금융기관 중 이러한 업무에 적합한 기관이 담당하게 하였다.

CRV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워크아웃 기업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의 매매,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하여 갖는 대출채권 등의 매매,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등 경영정상화 업무(동법 제19조 1항)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CRV 출자기관은 자회사 출자한도 및 재산운용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에 관한 각종 규제를 받지 않으며(제23조), 회사설립시의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도 법원이 아닌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는 등(제19조 3항, 4항) 많은 특례가 인정되었다. 또한 CRV에 대하여는 법인세 감면,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록세·취득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 혜택(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부여되었다.¹⁷⁾

당초 CRV는 채권액 및 출자전환지분율이 많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대우 계열사 등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았으나, CRV 설립은 신우, 오리온

16) 이른바 ‘런던식 접근법’에 의한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 지점을 포함한 208개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주도로 1998년 6월 25일 체결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을 말한다.

17) CRV를 CRC와 비교한다면 전자는 워크아웃 기업의 정리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페이퍼컴퍼니인 반면 후자는 직접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실체를 가진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RC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투자자가 되어 CRV와 관련을 맺으므로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임종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개요”, 한빛은행 주최 CRV 세미나 발표자료, 2000.12.12.

전기 등 몇 개에 그치고 말아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워크아웃 기업의 주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약」을 체결하고 순수 민간기구인 CRV 사무국까지 발족시켰음에도 그 이용이 부진한 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다.¹⁸⁾ 그것은 CRV에 출자 참여할 채권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채권액, 담보취득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고, CRV에 채권을 양도할 때 금융기관의 잠재 손실이 확정됨으로써 BIS 비율이 하락하고 채권관리인력이 遊休化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¹⁹⁾ 더욱이 제일은행과 같은 외국계 은행이나 도산절차에 들어간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채권을 CRV에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 건설·섬유 업종인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을 인수할 외국인투자자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다. 결국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기구, 제도의 창설은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그 임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넘겨준 채 종결되고 말았다.²⁰⁾

2.2. 流動化專門會社(SPC)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구조조정 전문기구라면 유동화전문회사라 할 수 있다. ‘SPC’라는 말 그대로 ‘破産으로부터의 절연’(bankruptcy remote)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재무제표 상으로 연결(consolidation)되지 않도록 SPC에 출자하는 은행의 지분은 5~15%를 한도로 하지만 부실채권을 정리하려는 채권은행의 의지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ABS)는 대상자산의 자산가치보다 현금흐름(cash flow)을 중시한다. ABS는 構造化를 통하여 SPC로부터의 담보부 대출(secured borrowing)이 아닌 진정한 매매(true sale)의 요건만 갖추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적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으므로 그 시행이 일천함에도 폭발적인 규모로 시장이 확대되었다. 자산유동화의 메리트는 같은 信託法理에 의하여 운용되는 擔保附社債信託과 비교할 때 뚜렷이 드러난다. 담보부사채신탁의 대상은 동산, 부동산, 채권, 주식 등에 한하지만(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 ABS의 대상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상환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가진 자산인 것으로 족하다. 이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독립된 法人格

18) 박훤일, “구조조정전문기구의 법인격에 관한 고찰”, 115~117면.

19) 최두열, 「현행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보고서 2001-06, 2001.12.19, 63면.

20) CRC는 채권금융기관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가 산업자원부 소관의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다. 사실 CRV, CRC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기능은 거의 비슷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무영역이 한정되다 보니 대부분 주식투자, 적대적 M&A를 통한 수익창출에 열중하였다. 최저자본금이 너무 적어(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조정) 1-2개 펀드를 만들었다가 투자에 실패할 경우에는 즉시 파산위기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을 갖고 자산의 관리·운용을 전문기관(servicer: 자산관리자)에 위탁하기 때문이다.²¹⁾

유동화증권은 2000년 이후 해마다 40~50조원 규모로 발행되고 있는데, 유동화의 대상이 처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채권(NPL)이었으나 카드회사의 신용카드채권, 일반기업의 매출채권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기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다. 오늘날 유동화채권은 전체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액(금융채 제외)의 40~5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會社債 담보부 증권) 발행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²²⁾

V. 主債權銀行의 當面課題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은행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관련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健全經營(safe and sound banking)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公的 資金의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부실기업의 증가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누적적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²³⁾ 그러므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솔선하여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개선작업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나,²⁴⁾ 앞으로는 법

21) 박현일, “담보부사채와 유동화증권의 비교”, 『Samil Financial Review』, 2000년 가을호 No.4 (삼일회계법인, 2000.11), 4~17면. <<http://www.samil.com>>

22)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자산유동화업무팀 보도자료, “2002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실적 분석”, 2003.2.10. <<http://www.fs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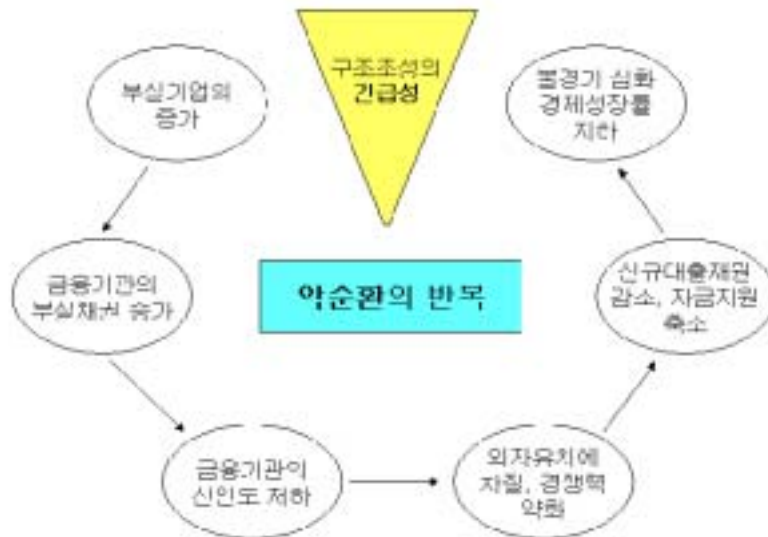
23) 한국산업은행, 『중국의 부실채권처리 연구』, 2002, 33~35면.

24) 1998년 6월 25일 이후 워크아웃이 실시된 기업은 총 96개사에 달한다. 그 중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된 17개사, 회사가 분할된 4개사를 제외하면 실제로 적용된 기업은 83개사이다.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보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 기업이 28개사, 자율추진으로 전환된 기업이 19개사로 회생을 한 기업은 전체의 56.6%인 47개사이며, 15개사는 워크아웃에 실패해 청산 또는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2002년 6월 말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21개사 중에도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주)대우의 무역부문), 신동방, 남선알미늄 등 연내 자율추진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이 많다. 대우 계열 1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한 채권총액은 총 35조원으로 이 채권을 모두 법정관리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공적자금이 최소한 20조원은 더 투입되어야 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워크아웃 4년, 회생률 56% 절반의 성공”, 2002.6.24자.

적·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채권은행들은 상시평가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전에 워크아웃 참여은행들이 계약에 의하여 또는 자율적으로 처리하던 사안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불필요하게 法으로 정하다 보니²⁵⁾ 채권은행들의 業務便覽처럼 상세한 사항까지 다루는 감도 없지 않다. 주채권은행의 역할과 기능, 채권금융기관 및 채무자의 모럴해저드 대책도 규정해야 하지만,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의 구속력 및 위반시의 효과, 통상마찰 가능성 등 법률문제는 현실적으로도 종종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企業構造調整의 緊急性



요컨대 主債權銀行이 유의해야 할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의 常時評價, 경영개선노력의 촉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주관 등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主導權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의 주거래은행(main bank) 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이

25) Spiros V. Bazinas,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rporate Reorganization: the example of the UNCITRAL draft Legislative Guides on Insolvency Law and Secured Transactions" (Nov. 15, 2002), 『국제거래법연구』 제11집, 2002, 26면.

되는데 그 선정 및 변경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고 있다(법 제2조 3호). 이는 과거 ‘官治金融’의 폐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지만 주채권은행은 정부 당국의 분신(alter ego)이나 단순한 집행기관(mere instrumentality)이 아니라 기업의 연쇄부도 등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법률상으로 은행만이 주채권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액이 많지 않거나 담보부 채권을 가진 은행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업무에 안이하게 대처하려 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 등 대국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킬 가능성도 있다.²⁶⁾ 이 때문에 정부의 감독과 영향력이 미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V)를 활성화시켜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맡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둘째, 채권금융기관이 모여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내지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부실기업의 연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채권금융기관 경영진 기타 외부의 압력이 작용하여 ‘부실기업의 원활한 退出(exit)’이라는 市場原理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사례를 보면, 독자 생존이 어려운 기업들이 회생가능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나 주주·종업원·협력업체 등 이익집단의 압력에 의하여 워크아웃 대상이 된 일도 있었다.²⁷⁾

셋째, 워크아웃 내지 기업구조조정의 또 다른 폐해는 바로 도덕적 해이의 문제다. 워크아웃으로 재무구조나 자금사정이 좋아진 워크아웃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격 덤핑을 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건설시장에서는 워크아웃 기업들이 재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受注 물량을 휩쓰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넷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효율적인 재채수단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위반을 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받은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정부의 補助金으로 간주되어 相計關稅를 부과 받지 않도록 제도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²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26) 2004년 벽두에 LG카드사 대책을 둘러싸고 외국자본이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외환은행과 한미은행은 공동관리방안에 반대하였다. 그렇다고 LG카드사에 회사정리법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공산이 커 정부와 채권은행들은 두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금융회사들에 의한 공동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LG카드 공동관리, 외환은행·한미은행 제외”, 2004.2.6-2.7자.

27) 대표적인 예가 대우자동차와 동아건설이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기간 중 대우자동차에 2조2,000억원, 동아건설에 1,500억원에 달하는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워크아웃에 실패하여 결국 대우자동차는 법정관리, 동아건설은 청산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정관리나 청산으로 갔다면 그 많은 헛돈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워크아웃 마무리 부실”, 2002.3.26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를 받은 하이닉스반도체가 2003년 4월 1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율(잠정)을 57.37% 부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²⁹⁾

V. 맺음말

1997년 우리나라를 엄습한 외환위기는 국내 금융기관들에 生死가 걸린 엄청난 시련을 안겨준 반면, 자산의 건전성 제고, 위험관리 등 새로운 생존방법에 대하여도 각성을 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금융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더 이상 官主導 방식을 통하지 않고 금융기관들이 自律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방안이 정부 당국의 즉흥적인 전략수정에서 비롯³⁰⁾되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게임법칙(rule of game)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³¹⁾

28) 국제적인 補助金 規範이라 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대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이 사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정부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논의에 직접·간접으로 개입하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하며, 어디까지나 채권금융기관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임이 참여 금융기관의 성격이나 수적 분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장승화, “기업구조조정과 WTO”, 국제거래법학회 월례발표회, 2002.6.29.

29) 미 상무부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소를 받아들여 2000년 12월 정부지분이 많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신디케이트론(協調融資)을 비롯해 수출환어음(DA) 한도 확대, 한국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2001년 5월의 전환사채(CB) 인수와 채무 만기연장, 2001년 10월의 신규 대출과 출자전환 등 동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모두 정부 영향력 하에 이루어진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은 IMF의 권고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는 점,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지원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여기에는 외국계 은행과 외국 컨설팅사도 공동 참여한 점,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혜택이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WTO 제소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고율 상계관세 직격탄 ‘하이닉스’ 어디로, 양국 정부 입장차”, 2003.4.3자.

30) 각주 3) 참조.

31) 한 언론사가 워크아웃 시행 4년 간의 성과에 대하여 국내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구조조정담당 임원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균 62점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종을 이루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는 대우자동차, 동아건설, 고합, 하이닉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등의 대기업이, 성공 사례로는 한창, 남광토건, 신원 등 중견기업들이 꼽혔는데 실패한 원인으로는 34.5%가 “워크아웃 계획의 이행부진”, 17.2%가 “초기판단 잘못”, 13.8%가 “채권금융기관간의 이해상충”을 지적했다. 매일경제신문, “워크아웃 도입 4년 功

<표 3>

債權銀行에 의한 企業構造調整의 功過

長 點	問 題 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연쇄도산의 방지 - 失業 등 사회적·경제적 충격의 최소화 -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의 제고 - 공적자금 투입의 최소화 - 채권금융기관들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적 처리를 통하여 통상마찰 회피 가능 - 官治金融의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기업의 은행의존도 심화, 영속화 - 채권회수에 염두를 둔 금융지원에 치중 - 채권단 결의의 구속력 미비 - 반대 금융기관이 많을 경우 구조조정 실효성 저하 - 제도운용이 미숙하면 정부보조금으로 인정될 가능성 상존 - 도덕적 해이의 심화, 시장질서 혼탁 우려
<p>構造調整 成功의 前置條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금융기관의 이익보다 국가경제, 금융시스템을 우선하는 大乘的인 고려 - 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 등 勞使 공동의 협조와 지원 - 자산관리, 경영컨설팅 등 전문가 집단의 유기적인 지원 -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상시 평가 시스템의 정착 - 현지 자본시장에서의 신규재원조달 용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채권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벌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래기업들이 영업을 잘 하고 信用管理를 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여신 규모가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은행이 신용위험을 常時評價를 하도록 한 것은 위험의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³²⁾ 이러한 조치는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폐지된 뒤에도 은행들이 부실기업을 제대로 감시·감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준비작업인 셈이다.³³⁾ 지금까지 살펴본 채권은행을

過 설문조사” 2002.6.24자.

32) 금융감독원은 2002년 11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은행감독규정에 반영하였다. 즉, 감독규정에 신용등급이 정상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지도, 회생 불가능한 부실기업 정리, 차입자의 신용상태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한 이상징후 차입자 관리, 여신감리제도 운영 등 은행의 여신사후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33) 한국경제신문, “부실기업 정리 은행 역할 강화”, 2002.11.6자.

통한 기업구조조정 功過를 간추리면 <표 3>과 같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限時法이므로 폐지 이후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통합도산법안에서도 도산기업의 회생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³⁴⁾ 법무부가 마련한 동 법안은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법률 명칭이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로 바뀌는 등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새 법안은 종전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하여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화의절차는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 중심으로 도산법제를 개편한 것이다. 따라서 부실기업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즉시 파산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이 새로 개선된 법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함에 있어서 CRV, CRC 등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채권은행이 주도권을 발휘하고 기존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기업풍토에 맞는 실효성 있는 부실채권처리 방안은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中國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34) 새 법안에서는 미국의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동안 회사정리·화의·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겼으나 성공한 예가 드물다는 것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크지 않은 한 기업의 사정을 잘 알고 고객관리를 잘 하는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남용되면 화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구자명·김옥순, 「부실채권정리와 구조조정」, 두남, 2001.
- 김정호, 「워크아웃의 이론과 실무」, 청림출판, 1999.
- 박변순, 「동남아 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 삼성경제연구소, 2000.
- 박영철·김동원·박경서, 「미완의 개혁: 금융, 기업구조 조정」, 삼성경제연구소, 2000.
- 박현일,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법률문제”, 「경영법무」, 1999.7.
- _____, “담보부사채와 유동화증권의 비교”, 「Samil Financial Review」, 2000년 가을호 No.4, 삼일회계법인, 2000.11.
- _____, “IMF 협약과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 「경희법학」 제35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00.12.
- _____, “구조조정전문기구의 법인격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36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01.8.
- 서 훈·조창현, 「출자전환과 구조조정실무」, 대일기업연구원, 1999.
- 정재룡·홍은주, 「부실채권 정리」,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최도성·지현열, 「회사정리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최두열, 「현행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보고서 2001-06, 2001.12.19.
- 한국산업은행, 「기업도산법 해설」, 1999.
- _____, 「도산법 개정방안」, 2001.
- _____, 「중국의 부실채권처리 연구」, 2002.
-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보도자료 및 각종 보고서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s.go.kr>>
- 주요 일간신문·경제신문 기사
- 田作朋雄·岡内幸策, 「不良債權處理ビジネス - 新しい金融業務と倒産法」, 東洋經濟新聞社, 1998.
- Spiros V. Bazinas,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rporate reorganization: the example of the UNCITRAL draft Legislative Guides on Insolvency Law and Secured Transactions” in the International Forum hos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November 15, 2002.

Ben Branch & Hugh Ray, *Bankruptcy Investing: How to Profit from Distressed Companies*, Beard Books, 1999.

Donald DePamphilis, *Mergers, Acquisitions, and Other Restructuring Activities: An Integrated Approach to Process, Tools, Cases and Solutions*, Academic Press, 2001.

Stuart C. Gilson, *Creating Value Through Corporate Restructuring: Case Studies in Bankruptcies, Buyouts, and Breakups*, John Wiley & Sons, 2001.

NYU School of Business, *Restructuring Firms & Industries*, John Wiley & Sons, 2001.

주제어: 구조조정, 채권은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워크아웃, 회사정리절차, 기업도산, 자산유동화(ABS), 자산관리회사(AMC),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Abstract>

Legal Analysis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Implemented by Creditor Banks

Park, Whon-II

The 1997 banking crisis in Korea has ushered in a new strategy for safe and sound banking and risk management. In allocating loanable funds, the banks no more rely on the government instructions. When President Kim Dae Jung embarked on the banking and corporate reform in the early 1998, the government gave plenty of rooms to creditor banks to either reorganize or liquidate client companies. It has been a new rule of game for banks to have the initiative in corporate restructuring.

Initially the government let 30 big business groups make agreements with their main creditor banks to improve their financial positions, and then prevented creditor banks from granting new loans to such conglomerates if they failed to enhance financial status. At present, creditor banks have got the authority to classify the financial soundness of client companies in applying for the appropriate proceedings among work-out, corporate reorganization, composition or bankruptcy.

The creditor bank-initiated restructuring is subject to respective agreements between the debtor company and creditor banks. If tens of banks involved in the restructuring program, they have difficulties to have a harmonized and legally binding conclusion. Occasionally, some marginal companies are not expected to produce significant results owing to lack of enthusiasm and moral hazard.

Accordingly,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in August 2001, which came into force one month later and will expire in the end of 2005. This Act has adopted a bank-initiated mechanism i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Some problems deriving out of its scope, legal effects, etc. have to be solved during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Recently corporate restructuring may be realized by means of restructuring specified legal entities controlled by creditor banks, such as an asset management company (AMC), special purpose company (SPC) for asset-backed securitization,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CRC), mutual fund-type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CRV), or 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CR-REITs).

This essay delves into the legal framework for the on-going corporate restructuring led by creditor banks, its tentative results and probable improvements of the current regime. The most conspicuous merit would be that this system could stop the serial insolvencies of marginal companies and massive layoffs. Also it could lessen the influx of public funds into the banking system and keep the bank management free of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any possible foreign trade frictions.

On the other hand, creditor bank-initiated restructuring scheme might not be constructive because insolvent companies more and more depend on banks out of moral hazard and disrespect of market rules, while creditor banks put the first priority to the collection of their own claims regardless of the interest of other creditors. If the meeting of creditor banks is heavily dependent on the government policy, any credit granting might be mistaken for a kind of unpermissible government subsidy as witnessed in the Hynix Semiconductor case.

Therefore, the following factors are requir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reditor banks-led corporate restructuring:

- Each and every creditor bank should think first the nation's economy, overall financial system rather than its own interest and profit;
- Concerted efforts should be made by both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for the effective reorganization of the company;
- Efficient consulting and advisory services could be provided by corporate restructuring specialists; and
- Permanent evaluation system of the corporate financial conditions should be available in the long run.

The on-going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would make good lessons to such countries as China, Viet Nam, etc, which are troubled by ever-increasing non-performing assets.